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21650호, 2026.5.19. 공포, 11.20. 시행)됨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범위와 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이익잉여금의 사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우정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서비스의 위탁 및 우정사업 위탁사무의 재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우정재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며, 우정사업의 부대사업 및 출자대상 사업 중 임대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우정사업의 부대사업에 포함되는 ‘임대업’을 ‘개발·임대업’으로 개정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하고, 이에 맞추어 출자 등의 대상 사업 범위에도 동일하게 반영함(안 제2조, 안 제15조의2)

- 나. 법률의 위임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범위와 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공서비스의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의2, 안 제14조제1항, 안 제14조의4)
- 다. 법률 위임에 따라 이익잉여금 사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2조의2제1항)
- 라. 우정사업 위탁사무의 재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제5항)
- 마. 우정재산의 사용료 납부에 대한 조문 정비(안 제22조)
- 기존 일부 우정재산에만 적용되던 사용료 납부에 관한 조문은 삭제함(안 제21조의2제4항, 안 제21조의2제5항)
 - 우정재산의 사용료의 분할납부 가능 근거를 정함(안 제22조)
 - 기존 비용부담관련 조항은 23조로 이동함(안 제23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6.9.00. ~ 10.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임대업”을 “개발·임대업”으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공공서비스의 범위) 법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지 및 환경 분야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를 말한다.

1. 위기가구 발굴,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분야
2.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 등 국민 안전분야
3. 자원순환 촉진 및 탄소중립 지원 등 환경분야
4. 행정조사 및 민원·공공사무 처리 등 행정분야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12조의2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그 밖에 우정사업 필수 인프라 투자를 위해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재원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를 제1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7호(중전의 제16호) 중 “제15호”를 “제1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공공서비스의 수요조사 및 집행에 관한 업무의 대행·수탁 및 그
부대사업

⑤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고, 재위탁받은 기
관에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4(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의 구축·운영) ① 법 제17조의3제2
항제4호에서 “그 밖에 플랫폼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공공서비스의 수요조사 및 집행에 관한 업무의 대행 및 수탁(이하
공공서비스 대행·수탁) 절차·방법에 관한 사항
2. 공공서비스 대행·수탁의 신규 발굴을 위한 국민제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플랫폼 활성화를 위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항

② 법 제17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
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4.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공공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6. 그 밖에 플랫폼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본부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본부장이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자료의 이용 목적·범위,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을 명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본부장은 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1. 공공서비스 대행·수탁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신규 공공서비스 제안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공공서비스 수요조사 및 우정자원 연계에 관한 사항

4. 공공서비스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플랫폼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5조의2제5호 중 “임대업”을 “개발·임대업”으로 한다.

제21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2조를 제23조로 하고,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사용료의 납부 방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 및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2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나누어 내게 하는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하며,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부대사업의 범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조(부대사업의 범위)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우체국사(郵便局舍) 및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u>임대업</u>	5. ----- <u>개발</u> <u>· 임대업</u>
6. ~ 8. (생략)	6. ~ 8.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이익잉여금의 사용) ①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이익잉여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의2(이익잉여금의 사용) ①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u>그 밖에 우정사업 필수 인프라 투자를 위해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재원</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우정사업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할 때에는	제14조(우정사업의 위탁) ① ----- ----- ----- -----

위탁받을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업의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와, 제13호 및 이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 15. (생략)

<신설>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

② ~ ④ (생략)

<신설>

-----.
----- 제17호-----

-----.

1. ~ 15. (현행과 같음)

16. 공공서비스의 수요조사 및 집행에 관한 업무의 대행·수탁 및 그 부대사업

17. -----
-- 제16호---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은 위탁 받은 사무의 일부를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고, 재위탁받은 기관에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의4(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의 구축·운영) ① 법 제17조의 3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플랫폼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공공서비스의 수요조사 및 집행에 관한 업무의 대행 및 수탁(이하 공공서비스 대행·수탁) 절차·방법에 관한 사항

2. 공공서비스 대행·수탁의 신규 발굴을 위한 국민제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플랫폼 활성화를 위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7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
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
법인

4. 「초·중등교육법」, 「고등교
육법」,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공공
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
하는 단체

6. 그 밖에 플랫폼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본부장
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본부장이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자료의 이용 목적·범
위,제출기한 및 제출방법을 명
시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
다)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 또는 단
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서면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
출하여야 한다.

④ 본부장은 법 제17조의3제5항

제15조의2(출자 등의 범위) 법 제18조의2제5항에 따른 출자·출연·용자 또는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우체국사 및 토지의 효율적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1. 공공서비스 대행·수탁의 신청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 신규 공공서비스 제안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공공서비스 수요조사 및 우정자원 연계에 관한 사항 4. 공공서비스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플랫폼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5조의2(출자 등의 범위)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

활용을 위한 임대업

6.·7. (생략)

제21조의2(우정재산의 사용료 등의 특례) ① ~ ③ (생략)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정재산을 사용·수익허가하거나 대부할 때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연 12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하는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하며,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 개발·임대업

6.·7.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우정재산의 사용료 등의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제22조(사용료의 납부 방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u>제22조</u> (생략)	<u>법 제20조제3항 및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2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u> ② <u>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나누어 내게 하는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하며,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u> <u>제23조</u> (현행 제22조와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영총괄담당관	
연 락 처	(044) 200 - 8122